

구매·자재관리사 등록카드

※ 표시란은 기재하지 마시오.

사진
(2.5*3cm)
혹은
(3 * 4cm)

※ 자 격 증	자격부문	
	자격증번호	
※ 회원번호		

성 명	(한글)	(서명)	주민등록 번 호						-
	(한문)				X	X	X	X	X
주 소	우편번호 □□□□□□			TEL					
				H.P					
E-mail									
최종학교	학교		과	년도(졸업, 재학, 중퇴)					

□※ 구매/자재관리 실무 경력사항 (기관장 확인서 첨부)

기관(근무처)	부서/직위	근무기간	보 직	kpm 점수
		. . . ~ . . . (개월)		
		. . . ~ . . . (개월)		
		. . . ~ . . . (개월)		
kpm 점수 누계				

□※ 1 차 유효기간 kpm 점수 확보 현황 (자격 유효기간 : . . . ~ . . .)

No	적 요(교육과목)	시행기관	기 간(시간)	kpm 점수	확인
			(hr)		
			(hr)		
			(hr)		
			(hr)		
kpm 점수 누계					

□※ 2 차 유효기간 kpm 점수 확보 현황 (자격 유효기간 : . . . ~ . . .)

No	적 요 (교육과목)	시행기관	기 간(시간)	kpm 점수	확인
			(hr)		
			(hr)		
			(hr)		
kpm 점수 누계					

사단법인 한국구매자재관리협회 귀중

TEL) 02-2271-3691~4 FAX) 0303-0950-2784

구매·자재관리사(K.P.M.) 자격관리 운영지침

제 1 조 (목적)

구매·자재관리사의 전문성 증대와 수행업무의 윤리적 표준과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'구매·자재관리사' 자격 운영규정 제 9 조, 제 10 조에 의한 구매·자재관리사의 권위와 전문성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다.

제 2 조 (자격증 유효기간)

자격증 유효기간은 5년으로 만기일 이전에 갱신하여야 한다.

제 3 조 (자격증 갱신조건)

구매·자재관리사 자격제도 운영규정 제 9 조에 의거

1. 자격갱신을 위하여 자격유효기간 내에 kpm 점수 18 점을 취득하여야 한다.
2. kpm 점수 중 2/3 이상은 반드시 지정된 교육과정 이수와 실무경력 확보를 통하여 확보하여야 하고, 1/3 미만은 전문가로서의 공헌도(제 4 조 kpm 점수기준 3~6 항)로 확보할 수 있다.
3. 자격갱신을 위한 서류는 자격 유효기간 만료일 30 일전까지 당 협회에 접수되어야 한다.

제 4 조 (kpm 점수기준)

1. K.P.M.관리(보수)교육으로 인정된 일반교육과정 수료 (1 일 : 7 시간 이상) : 1 점
2. K.P.M.을 위한 세미나·포럼·사례발표대회 (1 일 : 4 시간 이상) : 3 점
3.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관련 학과 과정수료(학기당) : 1 점
4.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관련 학과 교육과목 강의(과목/학기당) : 1 점
5. 논문 및 사례연구 발표 등 정기간행물 기고(건-당) : 1 점
6. 협회행사 및 사업에 봉사(1 일 : 4 시간 이상) : 1 점
7. 자격갱신 특별 보수교육과정 : 0.5 점/hr

제 5 조 (자격관리 kpm 조건 감면·면제)

1. 구매·자재물류관리 실무경력 15년 이상 : kpm 점수면제(Lifetime K.P.M.)
2. 구매·자재물류관리 실무경력 kpm 점수 년 1 점 인정(최대 허용점수 : 9 점)
단, 이를 증명할(직무세부내용 기재) 기관/기업 대표(장) 확인 증빙서 제출

제 6 조 (자격정지/상실, 수수료 등)

구매·자재관리사 자격제도 운영규정 제 4 조, 제 10 조에 의거

1. (자격증 갱신 지연에 대한 처리) 유효기간 내에 자격증 갱신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자격갱신을 못할 경우 자격효력이 정지되며, 지체하여 자격갱신을 할 경우 지체된 자격증 유효기간은 소멸된다.
2. (자격상실) 자격 유효기간 만료 후 2년 이내에 갱신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자격이 상실된다.
3. 자격등록/ 갱신등록 및 자격증 발급 수수료
 - 1) 자격부문당 10,000 원이며, 자격부문 추가시마다 10,000 원씩 추가된다.
 - 2) K.P.M. TOP 자격은 50,000 원.
 - 3) 자격 갱신시 자격증 발급수수료는 30,000 원

제 7 조 (기타)

1. 연락처(현 주소, 전화번호, H.P 번호, e-mail) 변경 즉시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.

부 칙

1. 본 지침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 2005년 이전에 취득한 kpm 점수는 현행 운영지침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.

부 칙

1. 본 지침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본 지침은 2007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본 지침은 2008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.

